



# 보도자료

보도일시	2008. 9. 18(목) 15:00 (방송·인터넷 포함)		
배포일시	2008. 9. 17(수) 9:00	담당부서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
담당과장	고경모 (2150-4510) 송준상 (2150-4530)	담당자	박홍진 사무관 (2150-4511) 김희재 사무관 (2150-4532)

## 제목: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

- 정부는 '08.9.12(금)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위기관리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추진계획」을 확정된 이후,
  - '08.9.18(목) 대통령 주재 「제2차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관련내용을 보고
- 이번 대책에서는 지난 6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 계획'과 마찬가지로 "Matrix형 접근방식"으로 개선방안을 강구
  - 기업활동 지원부문에서는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요체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에 중점을 두고 개선방안을 마련
  - 규제완화 부문에서는 1단계 대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물류, 정보통신, 외환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 이와 함께, 「제1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 회의」(4.28일)시 기업건의사항(37개)에 대한 조치사항도 확정·반영
  - 37개 과제 중에는 기업의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전제로 한 것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향후 투자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각 부문별 주요 과제(요약)>

### 【 중소기업 지원 강화 】

#### (현황 및 필요성)

- 2000년대 초 벤처 붐 이래로 중소기업을 통해 경제활력 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조치가 있었음
  -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의 생존유지, 실질 없는 벤처기업의 거품 등 적지않은 부작용이 발생한 것도 사실
- 이에 따라, 그간 중소기업의 지원이 부작용을 우려하여 소극적·형식적으로 흐르고, 대외여건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최근 고유가 등에 직면하여 설비투자를 크게 줄이고 있는 상황
  -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을 통한 경기회복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실정
- 정부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근거하여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단기적인 지원조치를 해나가는 한편, 이번 2단계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

#### (개선방안)

- 일자리 창출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 ①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②경영지원, ③창업·벤처 활성화, ④인력수급여건 개선 등 지원내용을 다수 포함
  -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R&D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와 대기업이 매칭하여 지원하는 중기 R&D 지원 펀드 조성\* 등
    - \* 금년 대비 약 13% 증액, 08년 4,300억원 → 09년 4,800억원 수준
    - \*\* 금년중에 100억원 규모로 출발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확충
  - (지역 산업클러스터 확충) '기능대학 개편 방안' 마련, 대학의 산업단지 내 교육과정(계약학과) 설치허용 등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산학연 기반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

- (디자인·브랜드 능력 보완)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디자인·브랜드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 디자인 출원료·최초 3년분 설정등록료 감면, 디자인 경영컨설팅 지원 확대, 디자인 전문가 고용비용 지원, 글로벌 브랜드개발 및 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
-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 녹색성장의 기반확충을 위해 '탄소펀드'를 확대 운용하고, '탄소라벨링' 제도<sup>\*\*\*</sup> 본격시행('08.12월)
  - \*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08.8월부터 최초투자 실시
  - \*\* CO<sub>2</sub> 배출량을 병기하여 소비자가 저탄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해외진출 기업 국내 U-턴 지원) 국내로 U-턴하는 해외투자 기업을 '중소기업 사업전환 용자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임대산업단지 입주시 우선순위 부여 등을 통해 적극 유치
- (창업·벤처 활성화) '1인기업 지원 프로그램', '주말 창업학교' 운영, 사업전환 승인신청 자격업종 제한 폐지, M&A 활성화를 위한 간이 영업양도 제도<sup>\*\*\*</sup> 도입 등을 추진
  - \* 1인기업에 대해 경영·법률·세무 지식을 전수하고 공동작업 공간을 제공
  - \*\* 영업양도시 주주총회결의를 이사회결의로 대체
- (인력수급 여건개선) 해외 퇴직 전문기술자 활용 지원 강화, 중소기업과 공고·전문대를 연계한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대<sup>\*\*</sup>
  - \* 지원내용 강화 : (현행) 도입인력 1인당 1년간 1천만원 한도, 업체당 4명까지 지원  
→ (개선안) : 2년간 2천만원 한도, 업체당 5명까지 지원
  - \*\* 지원규모 : ('07) 50개 공고, 1,535명 → ('08) 65개 공고 및 3개 전문대, 1,950명  
→ ('09) 65개 공고 및 10개 전문대, 2,200명
- 일자리를 늘리면서도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법 보완(연내 방안 마련)

## 【 규제 완화 】

### (현황 및 필요성)

-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수도권·대기업 등의 핵심규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하는 동시에
  - 기업을 둘러싼 수많은 요인 중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애로가 되는 각종 규제에 대해서는 그 존치필요성 여부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활동의 각 부문을 나누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중점 해소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
  - 지난번 1차 대책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이용 관련 규제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였고,
  - 이번 2차 대책에서는 물류, 정보통신, 외환 등의 규제완화, 특히 외환거래 분야의 규제 개선 과제를 중점 발굴하였음

### (개선방안)

- (물류) 동북아 물류허브로서의 기능확충, 특히 항만관련 각종 불합리한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
  - 물류비용 절감 및 물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항만 하역요금 체계 개선, ODCY 운영기간 조정, 예선업 규제완화, Tug Car 등록기준 합리화 등 추진
- (정보통신) 세계 최고수준의 인프라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관련산업을 집중 육성하던 시절에 도입한 행정편의적 규제들이 일부 존치하여 개선필요성이 제기
  - 이용약관 인가제 개선, 유선통신사업자에 대한 연구개발 출연금 부담 경감, 기간통신 사업자 임원결격 사유 합리화 등 추진

- (외환거래) 외환거래 관련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여 기업·금융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
  - (외환거래시 기업편의 제고) 대외채권의 국내 회수 의무를 폐지하여 채권회수 관련 인력 및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국제입찰시 보증 관련 신고절차도 간소화
  - (해외현지법인 운용의 탄력성 확대) 개별현지법인에 대한 현지금융 한도를 폐지하여 현지법인의 자금운용의 탄력성을 확대하고, 상호계산계정의 결산주기를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
  - (위반행위 제재 수단 합리화) '거래정지형 행정처분' 또는 '형벌' 위주의 제재방식을 '경고', '과징금' 등 금전형 제재방식으로 개선하고 제재확정시까지의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제재에 따른 과도한 기업불편을 완화

**【 당면 투자애로 해소 】**

- 「제1차 민관합동회의」에서 각 기업들이 당면한 애로를 제기
  - 정부는 이에 대해서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추진이 불가한 사유를 분명하게 제시하여 투자관련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 기업의 건의가 합리적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조기에 개선방향을 확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 강구
- ① (추진완료) 군사시설규제완화, 산업단지내 전기공급시설 부담 완화, 하도급관련 납품단가 조정시스템 도입 등 12개 과제
  - \* 중소기업 고용특별세액공제 도입, 투자보험공사 설립 등 2개 과제는 추진이 곤란하나, 대안제시를 통해 추진완료

- ② (정상추진중) 친환경차에 대한 R&D지원 확대, 중소기업 가업상속시 상속세 완화,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제 개선 등 20개 과제
- ③ (추가검토중) 제2롯데월드 신축, 지주회사 체제내 익금불산입 범위 확대여부 등 2개 과제
- ④ (추진곤란) 사회복지무인력의 중소기업제조업 지원,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등 기업관련 상속세제 개선석유화학산업 기업결합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 등 3개 과제

※ 상세내용 : 별도 배포 자료 참조

※ 관계부처 연락처

관계부처명	해당과	담당자	연락처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정여진 사무관	2150-4753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박성천 중령	748-5815
	인사기획관실	이정수 서기관	748-5131
지식경제부	기업환경개선팀	김열규 사무관	2110-5078
환경부	교통환경과	이정용 사무관	2110-6808
국토해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현 사무관	2110-6148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기획과	조민영 사무관	750-2514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유승정 사무관	042-481-7825
중소기업청	정책조정총괄과	조경원 서기관	042-481-4540

기획재정부 대변인

이 자료는 2008년 9월 18일 15: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

2008. 9. 12.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관세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 목 차

I. 추진 개요	1
II. 기본 방향	2
III. 분야별 주요내용	3
1. 중소기업 지원강화	4
① 기술개발 지원 인프라 확충	4
② 경영지원 강화	6
③ 창업·벤처 활성화	8
④ 인력수급 여건개선	10
2. 규제완화	11
① 물류 규제	11
② 정보통신규제	13
③ 외환거래 규제	14
IV. 당면투자 애로해소	16
1. 추진경과	16
2. 건의과제별 추진상황	17
V. 향후 추진계획 (Action Plan)	33
[별첨] 과제별 세부 추진 일정	34

## I. 추진 개요

- 지난 6월 총 47개의 개선과제를 담은 새 정부의 첫 번째 「기업환경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
  - 기업환경의 각 분야(입지·환경·인력·법률·지원제도 등)와 기업의 life-cycle(창업-경영-업종전환·퇴출 등)을 교차·연결하는 **Matrix** 방식으로 개선방안 마련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수 및 중소기업 업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 부진이 심화되는 모습<sup>1)</sup>
  - 원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 미국 등 선진국 경제의 침체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인한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에도 원인이 있으나,
  - 핵심 규제개혁 과제의 추진이 지연되고, 기업의 당면 투자 애로가 속도감있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도 기인
-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핵심 규제 개혁과제와 당면 투자 애로 해소를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한편,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할 필요
- 금번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에서는
  - 기업의 투자욕을 보다 북돋우고자 「제1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08.4.28)에서 기업들이 제기한 투자애로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강구함과 아울러, 물류, 정보통신, 외환 등의 분야에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추진

1) 다만, 30대 그룹의 경우 시설투자로 상반기 중 29조원을 투자하여 전년 동기 대비 20.4% 증가세 시현 ('08.8.25 전경련 발표)

## II. 기본 방향

- ◇ 금번 2단계 대책은 경제5단체·지자체 등에서 건의된 과제와 자체 발굴한 과제를 중심으로 과제 발굴 단계부터 「Matrix형 접근방식」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 (추진경과) 건의과제 검토('08.6월) → 기획재정부 및 관계 부처별 자체과제 발굴('08.7월) → 발굴된 과제를 대상으로 수차례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개선방안 도출('08.8월)
  - (개선내용) 기업활동 지원분야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
    - 규제완화는 1단계 대책에서 검토되지 않은 물류, 정보통신, 외환 등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 ◇ 이와 함께,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건의된 기업투자애로 해소 과제(37개)에 대한 조치 방안을 확정·반영
  - (추진경과) 6,7월 두 차례의 실적점검 결과를 토대로 실무회의(7.24일, 9.5일)를 거쳐,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상정(9.4일)하여 주요 쟁점과제의 추진방향을 논의
  - (개선내용) 군사시설규제완화, 하도급거래시 납품가격 조정시스템 도입, 중소기업 가업상속시 상속세 완화 등 32개 과제에 대해서는 추진완료하였거나 추진방향을 마련하여 정상추진 중
    - 제2롯데월드 신축허용 등 2개 과제는 관계부처 추가 협의를 거쳐 조속히 개선방안을 확정
    - 석유화학산업 기업결합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 등 추진이 곤란한 3개 과제에 대해서는 추진불가사유를 분명하게 제시
- ◇ 앞으로도 既 구축된 기업환경개선대책 추진체계를 통해 새로운 과제의 발굴과 개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

### Ⅲ. 분야별 주요내용

#### 《 분야별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amp;D·사업화 지원 및 산업 클러스터 고도화를 통해 기술개발·확산 인프라를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기 R&amp;D 지원펀드 조성</li> <li>·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산학연 기반 클러스터 구축</li> </ul> </li> </ul>
	효율적 경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 글로벌화 등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의 디자인·브랜드 능력 제고</li> <li>· 글로벌화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U-턴 지원 등</li> </ul> </li> </ul>
	창업/벤처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디어·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업전환·M&amp;A 등을 통한 재창업 지원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기업 지원 프로그램, 주말창업학교 등 운영</li> <li>· 중소기업 사업전환지원 적용대상 확대 등</li> </ul> </li> </ul>
	인력수급 여건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공급을 확대하고 고용관련 제도를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국의 은퇴전문가 활용 지원</li> <li>· 중소기업과 공고·전문대를 연계한 맞춤형 인력양성 등</li> </ul> </li> </ul>
	물류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류비용 절감 및 물류서비스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여건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하역 요금체계 개선 등 항만관련 규제완화</li> <li>· 차량 운행 관련 규제 합리화 등</li> </ul> </li> </ul>
규제완화	정보통신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관련규제를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약관 인가제 개선</li> <li>· 연구개발 출연금제도 합리화 등</li> </ul> </li> </ul>
	외환거래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금융회사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일반국민의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환 거래관련 각종 신고요건 개선</li> <li>· 상호계산제정 관련 기업의 부담완화 등</li> </ul> </li> </ul>

### 1. 중소·벤처기업 지원강화

- ◇ 급변하는 세계경제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
  - R&D 지원, 산학연 네트워크 및 창업·벤처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경영안정화와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병행 추진

#### 1-①. 기술개발 지원 인프라 확충

□ (중소기업 R&D 지원확대) '09년도 중소기업청 R&D 예산을 금년대비 13% 이상 대폭 확대('08년 4,300억원 → '09년 4,800억원 수준)

□ (중기 R&D 지원펀드 조성) 정부와 대기업이 매칭하여 중소기업 R&D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민관 공동 R&D 협력펀드' 조성

- 조성규모 : ('08년) 100억원 이상
- 조성방식 : 정부와 대기업이 2:1 비율로 매칭
- 지원대상 : 대기업의 R&D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 R&D 결과물은 중소기업 2/3, 대기업 1/3 소유

☞ 필요조치 : '08.12월 대기업과 MOU 체결 추진

□ (R&D 기획 및 사업화 강화) 중소기업이 R&D를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R&D '기획' 및 '사업화'에 대한 지원 강화

○ 'R&D기획 지원사업'을 실수요에 맞게 지속 확대하고,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 '08년 사업과제 30개 선정시 609개 업체가 신청한 바 있음(20:1 경쟁)

\*\* 중소 R&D 현장 실무인력 대상 통합교육시스템 구축(지식경제부) 등

- '09년부터 R&D 기획단계에서 '사업화 타당성 평가'를 받아 우수과제로 선정되는 경우 판로 등 R&D 사업화 단계까지 통합지원

□ (지역 산업클러스터 확충)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산학연 기반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기술개발 지원

- 지역전략산업에 맞추어 학과, 정원, 교과과정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기능대학 개편 방안' 마련('08.11월)

\* (예) 기능대학별 1~2개 학과를 지역전략산업학과로 개편(총60개), 기능대학을 평가인정대상기관에 포함하여 6·12개월 과정에 대해 학점 인정 추진 등

- 산업계 경험을 보유한 과학자·엔지니어를 산학 겸임교수\*로 활용하는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평가지표 반영 등) 추진

\* 겸임교수 이상의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주 2~3일 대학에 상주하며 학생 교육, 중소기업 지원, 산업체 공동 연구 등을 수행

☞ 필요조치 : 제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계획에 반영 ('09.상반기)

- 대학이 산업단지 내에서도 교육과정(계약학과)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체 근로자들의 참여기회를 확대

\* 교육기관이 국가, 지자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현재는 학습장 설치에 관련된 규제로 교육장소가 대학내로 한정

☞ 필요조치 :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

□ (지역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산업단지 클러스터내 업종·기술별 소규모 산학연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 산업단지 밖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 인근 산업집적지의 산학연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유도

☞ 필요조치 :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수립('09.3월)

- 기존 지역혁신 지원 기관\*을 테크노파크로 통합·연계하고 지방 중소기업 지원기관(지방중기청 등)과도 협력 강화

\* 테크노파크(17개 TP), 지역특화센터(82개), 지역혁신센터(117개) 등

☞ 필요조치 : 지역혁신 지원기관의 통합·연계 추진('09.상반)

1-②. 경영지원 강화

□ (디자인개발 지원 강화) 제품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지원 강화

- '디자인 출원료·최초 3년분 설정등록료' 감면 : (현행) 소기업 70%, 중기업 50% → 중·소기업 70%

☞ 필요조치 : '09.1월부터 디자인 관련 수수료 체계 개편

- 디자인 전문가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활용·지원하는 '디자인 경영 컨설팅' 지원제도 확대

\* '08년 시범사업 실시(약 30개 기업) 후, '09년부터는 업체당 지원규모를 확대('08년 5천만원→'09년 1억원)

- 현행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을 활용, 일정수준 이상의 디자인전문가 고용비용(1~2년) 지원방안 마련

- 우리나라 GD\* 인증제도와 해외(독일, 스페인 등) 디자인 시상 제도간 상호인정 추진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거, 상품의 외관·기능·재료·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디자인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 Good Design 마크 부여('85년 도입)

□ (중소기업 브랜드 개발 지원) 중소기업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위해 전략품목 공동브랜드의 해외진출시 '09년부터 글로벌 브랜드개발 및 해외마케팅 지원

\* 현행 수출중소기업 Global Brand 육성사업 등에 반영 추진

□ (금융지원 확충) 프리보드 시장 활성화, 기술평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기술력 있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

○ 모태펀드 투자대상 조합선정 심사시 '프리보드 전문투자조합(가칭)'을 우대하여 초기성장기업 전용 자본시장인 프리보드 시장 활성화 추진

☞ 필요조치 : '08년중 중기청 「모태조합운용지침」 개정

○ 중소기업 전용 수출금융 공급체계 구축('08.10월)

\* 상업은행(수출금융 공급), 수출보험공사(위험커버), 플랜트산업협회(타당성 검토) 공동으로 중소기업 수출금융공급 시스템 마련

○ 기술사업화 DB\* 통합 유통체계 구축('08.10월중 착수)

\* 기술이전촉진법 등 각종 법령에 따라 기보 등 42개의 기술평가기관이 지정되어 운영중

□ (글로벌화 및 해외진출 기업의 U턴 지원)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을 촉진하고, 국내로 U턴하는 해외투자기업의 정착 지원강화

○ '중견 무역상사 지정제도(무역협회)'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

○ 해외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집적화하여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한 **One Stop** 서비스 창구로 활용

\* KOTRA무역관을 종합비즈니스 센터(Korea Business Center)로 전환하여 해외시장정보, 마케팅, 물류 등을 포함한 토탈 마케팅 지원 창구로 개편

○ 부품소재 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금년말까지 한·일 부품소재 전용공단 조성방안 마련·추진

- '08.10~11월중 일본기업에 대한 로드쇼 → '08.12월 '외국인 투자위원회'에서 전용공단 지정 등 내용확정

○ 국내로 U턴하는 해외투자 기업을 중기청의 '사업전환 용자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임대산업단지 입주시 우선순위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 KOTRA의 '해외진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가별 청산절차·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

\* 국가별 기업정리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11월)

□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조기 대응체제 구축

○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온실가스 관련 국가표준을 정비·보급('08~'12)하고 신뢰성 있는 검·인증체제 구축 지원

○ 탄소배출량표시제 관련 국제표준화(ISO)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이 국제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09~'11)

○ 중소기업이 사전에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펀드'를 확대 운용하고, '탄소라벨링' 제도 본격시행('08.12월)

\*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08.8월부터 최초투자 실시

\*\* CO<sub>2</sub> 배출량을 병기하여 소비자가 저탄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1-③. 창업·벤처 활성화

□ (창업 활성화 지원)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1인 기업'을 활성화하고, 장기 근속자 등의 창업촉진을 지원

○ '1인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영, 법률 및 세무 등에 대한 지식을 전수하고 1인 기업가간 컨소시엄 작업시 공동 작업공간 제공

\* 新아이디어·기술 보유자, 금융전문가, 시간강사,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통역사 등

☞ 필요조치 : '09년 중 「1인기업 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 기술력 있는 회사에서 장기 근무한 창업지원자에 대해 '주말 창업 학교' 등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 \* 전형적 기술기업 창업가는 중년이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출신대학 소재 州에 창업하는 경향 ('08.5. 美 유잉매리온카우프만재단)
    - ☞ 필요조치 : '08.10월 주말창업강좌 시범운영(8개 강좌, 240명)
- 실태조사, 수요자 의견 등을 반영하여 '창업보육센터(BI)'의 전반적인 체계 개편방안 마련('08.12월)
  - \* (예시) 지식기반 서비스업, BT(Bio-Tech) 관련업종 등 입주업종 확대 및 특화 창업보육센터간 지원 차등화 및 자생력이 부족한 센터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
- (구조조정 촉진) 승인신청 자격 업종 제한을 폐지(향락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하여 중소기업 사업전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 ☞ 필요조치 : 중소기업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
-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원활한 회생 및 신속한 사업정리 지원을 위해 '회생 및 사업정리 정보시스템' 구축('08.10월)
  - \* 워크아웃 등 사적 회생절차 및 통합도산법상의 회생·파산절차 등 회생 및 사업정리에 대한 종합정보 제공
- (벤처기업 지원제도 정비) 자생력 있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에서 졸업시키되, R&D 등 혁신역량 제고에 필요한 지원\*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마련('09년)
  - \* (예시) 산업재산권 출자 특례, M&A 절차 간소화, 스톡옵션 등 벤처법상의 간접적 지원사항
    - ☞ 필요조치 : '09년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 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영업양도'시 주주총회를 이사회결의로 대체할 수 있는 '간이 영업양도 제도' 도입\*
  - \* 양도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양수회사가 양도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필요조치 : '08년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 1-④. 인력수급 여건개선

- (선진국의 은퇴 전문가 활용 지원강화) 선진국의 기술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부담을 경감
  - '해외기술인력 도입 지원사업'(중기청)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퇴직기술자 활용을 적극 지원
    - \* 지원내용 강화 : (현행) 도입인력 1인당 1년간 1천만원 한도, 업체당 4명까지 지원 → (개선안) : 2년간 2천만원 한도, 업체당 5명까지 지원
  - KOTRA 해외네트워크(Contact Korea)를 통해 해외 전문인력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우리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알선 지원
    - \* '08년 25개 무역관에 Contact Korea 설치, 해외 우수인재 발굴·검증 및 DB를 구축하고 국내기업 등 수요처에 제공
-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확대) 중소기업과 공고·전문대를 연계한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연차적·단계적으로 확대\*
  - \* 인건비, 입영연기, 훈련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중기청·교육부·노동부·병무청 공동 협력추진사업
    - \* 지원규모 : ('07) 50개 공고, 1,535명 → ('08) 65개 공고 및 3개 전문대, 1,950명 → ('09) 65개 공고 및 10개 전문대, 2,200명
- (비정규직법 보완)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업종별 실태분석 등을 거쳐 연내에 보완방안 마련
  - 일자리 양을 늘리면서 불합리한 차별시정 등 일자리의 질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

## 2. 규제 완화

### ◇ 분야별 핵심규제 개혁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

- 법령개정 없이도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08.10월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11월말까지 조치 완료
- 법률개정이 필요한 정책성 규제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가능한 금년내 법률안 제출 등 조치 완료

### 2-①. 물류 규제

- (항만하역 요금체계 개선) 하역장비 현대화·기계화 등을 감안하여 인력의존형 작업방식에 기초한 기존의 하역요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
  - 기본요금 체계의 간소화, 불합리한 할증요금 폐지, 하역장소 및 범위별 요금체계를 일정한 요금체제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추진
    - ☞ 필요조치: 「항만하역요금표」 개정
- (항만밖 컨테이너 보세처리장 탄력 운영<sup>2)</sup>) 항만내 야적장 시설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중인 “항만밖 컨테이너 보세처리장(ODCY : Off Dock Container Yard)”의 운영기한을 탄력 조정
  - 컨테이너 보세처리장 폐쇄로 인한 물류지체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항만 물류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ODCY의 운영기한을 재조정하는 방안 검토·추진
    - ☞ 필요조치 :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 (예선업 규제완화 추진) 예선업은 국내외 선박에 대해 차별없는 예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 화주 또는 해운선사의 예선업 등록을 금지하고 자가소유 예선업체에게만 등록을 허용

2) 야적장 시설이 부족한 부산북항의 경우 인근에 부산항 ODCY를 설치·운영중이나 (전체 물동량의 24%를 처리), 동 시설의 운영기간이 금년말로 만료되어 예정대로 폐지될 경우 대체시설인 부산신항의 완전개장 이전까지 항만 물류처리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

- 원활한 항만·물류 운영을 위해 특정 대량 화주의 예선업 등록대상 확대 등 예선업 규제완화 방안 강구

☞ 필요조치: 예선업체 여건 분석('08말) 등을 통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항만법에 반영

- (Tug Car 등록기준 합리화) 항공화물 견인에 사용되는 Tug Car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충족 곤란 등으로 등록 및 일반 도로 운행이 불가능하여 공항 밖으로의 화물이동 등 장비의 원활한 활용이 곤란

- Tug Car 운행실태, 미등록 차량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등록 원활화 방안을 강구

☞ 필요조치 :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

- (제한차량 운행허가 처리방식 개선) 도로의 구조 보전 등을 위해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에 대한 운행허가 처리방식<sup>3)</sup> 개선
  -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현행 5~10일 → 1~2일)하는 방안 추진

☞ 필요조치: 제한차량 운행허가 인터넷 프로그램 개발·시행

3) 제한차량에 대한 운행허가는 관계법상 도로관리청(도로법)과 경찰서(도로교통법)로부터 각각 별도로 받아야 하는 관계로 허가절차에 걸리는 기간이 평균 10일 내외 소요

## 2-②. 정보통신 규제

- (이용약관 규제<sup>4)</sup> 개선) 인가대상으로 지정된 기간통신사업자라 하더라도 지배력 남용의 우려가 해소된 경우에는 이용약관 인가 대상(요금인가)을 신고대상으로 전환

☞ 필요조치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 (연구개발 출연금 제도 개선) 유·무선 구분없이 통신사업자 일반에 적용되고 있는 연구개발 출연금 제도<sup>5)</sup>를 통신환경의 변화에 맞게 합리화

- 무선통신과 달리 신규진입이 자유로운 유선 통신 사업자에 대해서는 출연금 부담을 경감<sup>6)</sup>

☞ 필요조치: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개정

- (임원결격 사유기준 합리화) 기간통신 사업자의 임원결격 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

- 벌금형 선고 이후 “3년”(징역형의 경우와 동일)을 경과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결격사유 기준을 “1년”으로 단축

- ‘사업허가 취소’시 취소된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임원’에게 적용했던 결격사유 기준을 합리화하여

- 취소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원’에 대해서만 적용

☞ 필요조치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4) 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은 원칙적으로 신고사항이나,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서비스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최상위인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연단위로 인가 대상을 지정(현재 KT의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SKT의 이동전화가 인가대상)
- 5) 통신시장 출연금은 자연독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회수하여 정보통신분야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
- 6) 유선통신사업자에 대한 출연금 부과비율(전년도 매출액의 0.5%)을 '09년부터 매년 0.1%p씩(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0.15%씩) 감면하여 '13년까지 완전 폐지

## ③ 외환거래 규제

- (대외채권 회수의무<sup>7)</sup> 합리화) 국내기업이 비거주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만기후 1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회수하도록 하고 있는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폐지

- 다만, 채권보유현황은 매년 보고하도록 하고, 유사시에는 정부가 직권으로 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보완장치 마련

☞ 필요조치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 (현지법인의 현지금융 활용방식 개선) 전체 현지법인에 대한 모기업의 총액보증한도를 사전신고한 경우 동 한도내에서의 개별 현지법인별 현지금융 한도규제<sup>8)</sup>는 폐지

- 현지법인별 자금상황에 따라 현지금융의 탄력적 운용 가능

☞ 필요조치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 (외국환 거래법령 위반시 제재 합리화) 거래·영업정지 위주의 현행 제재방식을 금전형 제재방식(과태료)로 변경하고 제재 확정시까지 거래를 허용하여 제재에 따른 과도한 피해 방지

- 또한 “경고”, “과징금” 등 다양한 제재방식을 도입하여 위반사유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리화

☞ 필요조치 : 「외국환거래법」 개정

- (입찰·수입대행처에 대한 이행보증 신고완화) 국제경쟁입찰에서 현지국 등의 요구에 따라 이행보증 계약시 절차를 간소화

7) 건당 50만불 이상의 대외채권은 원칙적으로 1년6개월 이내 회수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韓銀 등에 사전신고 필요

8) (현행) 개별 현지법인의 현지금융한도 = 총 보증한도 ÷ 현지법인 수 × 2

## IV. 당면 투자애로 해소

### 1. 추진경과

◇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제1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 개최('08.4.28일)

○ 1차 회의시 논의된 기업들의 당면투자애로사항을 검토, 처리결과를 제2차 민관합동회의(9.18일)에 보고기로 결정

□ 제1차 회의 당시 경제단체와 개별기업이 제기한 투자 및 고용관련 애로사항은 총 37개

○ 대기업·수도권 관련 규제 완화 및 세제·금융지원 확대와 관련한 건의 사항이 다수

정부 지원	규제 완화			세제					기타
	대기업	수도권	군사	노통	일반	기타			
17	5	2	2	2	2	2	7		

□ 37개 기업건의사항에 대해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도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

○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 i) 12개 과제는 추진완료(2개 과제는 대안제시 통해 완료),
- ii) 20개 과제는 추진방향 마련 후 정상추진 중,
- iii) 2개 과제는 추가 검토 중(가능한 금년 말까지 방안 확정),
- iv) 3개 과제는 추진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

○ 입찰 초청서 또는 계약서에 입찰대행처 및 수입대행처에 대한 이행보증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sup>9)</sup>하여 국제입찰의 불편 개선

☞ 필요조치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 (외국환 거래 관련 행정절차 개선)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 및 상담시 발생하는 기관간 유권해석의 차이, 복잡한 신고 절차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신고절차의 간소화, 기관간 유권해석 분담 (1차 : 韓銀, 최종 : 재정부)

☞ 필요조치 : 유관기관간 협조 강화

□ (상호계산계정의 결산주기 개선) 기업이 상호계산계정<sup>10)</sup>을 활용하는 경우 결산주기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

※ 현재 상호계산계정의 결산주기가 일률적으로 지정(1달)

○ 기업이 각 거래은행과 협의하여 기업특성에 적합하게 결산 주기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유연한 대금지급 허용

☞ 필요조치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 (금융기관 외국환 업무 허용범위 확대) 외국환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들이 취급할 수 있는 외국환 업무의 범위를 확대

○ 증권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이 해당업법에서 허용하는 업무는 대부분 외화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국환 업무범위에 negative system을 도입하여 금융허브로서의 육성을 지원

※ 다만, 차입 등과 같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허용 검토

☞ 필요조치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9) 외국정부 등이 발주한 대형공사나 물품공급 계약시 계약당사자는 국내기업과 발주기관이나 이행보증은 대행처로 요구 → 제3자 보증으로서 한은 신고사항에 해당

10) 특정 상대방과 거래가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결제의 편의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상계처리할 수 있는 계정을 미리 개설, 상계하여 지급하는 방법

## 2. 건의과제별 추진상황

### 1. 추진완료(12개)

#### ① 군사시설 규제완화

- (건의내용) 엄격한 군사시설 보호규제로 인해 통제보호구역내 공장 신·증축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토지형질 변경시 군부대 동의 필요
- (처리내용) 군사시설보호구역 범위의 조정·축소, 제한보호구역내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협의업무의 지자체 위탁을 확대하는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를 완화(기업환경개선추진계획, 6.11)
  - \* (통제보호구역) 군사분계선 '15km이내'에서 '10km' 이내로 범위조정, 220km<sup>2</sup>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제한보호구역) 99km<sup>2</sup>를 보호구역에서 해제

#### ② 산업단지내 전기공급시설 부담 완화

- (건의내용) 산단내 개별기업이 154kV의 특고압 전기를 공급 받는 경우에도 한전의 비용부담으로 공급설비를 설치 요청<sup>11)</sup>
- (처리내용) 154kV의 특고압 전력이용시 전기를 공급받는 개별 기업이 송전철타 등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되,
  - 해당 산단내 154kV 전력수요가 급증하여 변전소의 공급 능력이 한계에 이르는 시점(2014년경 예상)에 한전이 철타를 인수·공용화하여 해당 개별기업의 부담을 경감

#### ③ 하도급 거래시 원자재 가격과 납품가격 조정시스템 도입

- (건의내용)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는 소폭 상승하는 그치는 등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납품단가 조정시스템 도입

- (추진방안)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대기업의 비용부담 전가 방지 및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8.20), 11월까지 국회제출)
  - \* 하도급 계약서 작성시 납품단가 조정절차 및 방법 명시  
조정신청권의 법적 보장, 조정협의를 성실히 임할 의무 부과 등

#### ④ 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격 재조정

- (건의내용)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용량을 확대하고 기준가격을 재조정
- (처리내용)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방안」(4.25)에 따라 한계용량을 확대하고 기준가격을 인하<sup>12)</sup>(관련고시개정, 5.13)

#### ⑤ 창업규제의 획기적 개선

- (건의내용) 법인설립시 기관방문 횟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법인설립 비용<sup>13)</sup>을 낮추어 창업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 (처리내용) 법인설립 절차 및 비용절감을 위한 창업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4.30)
  - \* 상법상 최저자본금제 폐지, 유사상호 금지조항 폐지, 법인 설립시 채권매입의무(자본금의 0.1%) 폐지 등을 통해 창업기간은 167일→68일로 단축하고, 창업비용은 4,400만원→1,900만원으로 절감
  - 창업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중과제도 완화(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 6.11)

12) • 발전차액지원 한계용량 : (현행) 100MW → (개선) 500MW  
• 발전차액지원 기준가격 (단, '08.9월 말까지 적용유예)

적용시점	적용기간	30kW 미만	30kW 이상			
		711.25	677.38			
'08.10.1 ~ '09.12.31	적용기간	30kW 이하	30kW 초과 200kW 이하	200kW 초과 1MW 이하	1MW 초과 3M 이하	3MW 초과
		15년	646.96	620.41	590.87	561.33
	20년	589.64	562.84	536.04	509.24	428.83
'10.1.1이후	20년	매년 재고시				

13) 법인설립시 방문기관 7개, 서류제출 32개(17일 이상 소요) 등 직간접비용은 130만원으로 캐나다의 35~65만원의 2배 이상

11) KCC는 '10년까지 충남 대죽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공장신설을 추진 중(투자금액 1.4조원)

⑥ 세금인하 및 자구노력을 통한 그린피 인하

- (건의내용) 해외 관광골프 수요의 국내전환을 위해 세금인하 및 업계 자구노력을 통해 골프장 그린피 인하 추진
- (처리내용) 지방 회원제골프장의 세부담 완화방안을 마련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재정위 통과(9.9), 지방세법개정안 행안위 통과(9.10))
- 골프장경영협회에서는 업계의 자구노력 계획을 발표(4.28)하고, 이에 따라 대부분 지방 회원제골프장은 그린피 인하를 위한 자구노력 계획서를 제출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부담 완화방안>

구 분	현행	개선
• 개별소비세 및 체육진흥기금 부가금	개별소비세 21,120원 체육진흥기금 부가금 3,000원	전액 감면
• 증부세(원형보전지)	종합합산 1~4%	별도합산특례 0.8% (과세기준 200억원 초과시 0.8% 단일세율 적용)
• 재산세(원형보전지) (개발지 및 건축물)	종합합산 0.2%~0.5% 분리과세 4%	별도합산 0.2~0.4% 분리과세 2%
•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	과세표준액의 2%

\* 교육세(30%), 농특세(30%), 부가세(10%) 포함

⑦ 협력업체 연구개발, 교육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건의내용) 기술경쟁력 있는 협력업체 육성을 위해 협력업의 연구개발 및 인력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처리내용) 민간기업의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R&D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하고,
- 중소기업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 비용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는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와 중소기업의 R&D 지출 비용의 법인세 공제 등도 적극 활용

⑧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형의 새로운 모델 개발

- (건의내용) 산유국이 필요로 하는 도시기반시설 정비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등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새로운 모델 개발
- (처리내용) '자원개발+인프라건설' 패키지형 진출 지원방안<sup>14)</sup> 마련 (해외건설지원 종합대책, 7.4)
  - \* 2조원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 펀드 조성, 수출입은행을 통한 맞춤형 금융서비스 확대, 수주단계별 외교적 지원 강화 등
- 또한, 석유공사 유전개발 출자 확대 등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 6.8)

⑨ 미분양아파트 해소 등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

- (건의내용) 미분양아파트 누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지원
- (처리내용) 주택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현 지방 미분양 상황평가 및 정책 대응방향」<sup>14)</sup> 마련(6.11)
  - \* LTV 상향조정, 모기지보험 활성화, 미분양 주택 취득시 취·등록세 50% 감면, 매입 임대주택 요건 완화 등
  -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sup>14)</sup> 마련(8.21)
    - \* 30년 장기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미분양주택 증부세 비과세기간 확대,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배제대상 저가주택 범위 확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사업 세제지원, 지방 미분양아파트의 환매조건부 매입 등

⑩ 해외건설 수주호황 지속 지원

- (건의내용) 최근의 해외건설 수주호황<sup>14)</sup>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관리 방안 마련

14) 해외건설 수주액 추이 : ('04)95억\$→('05)109억\$→('06)165억\$→('07)395억\$→('08)500억\$ 이상 예상

- (처리내용) 해외건설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해외건설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7.4)
  - 글로벌 인프라 펀드(민관 공동, 2조원) 조성을 통한 패키지딜 진출 등 해외시장진출 다변화
  - 정보제공, 전문인력양성, 금융지원 등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 마련
  - 플랜트분야 및 초고층 빌딩, U-City 등 미래형 상품개발을 위한 R&D지원을 확대하여 해외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 <대안제시 통해 추진완료된 과제>

### 11 투자보험공사 설립

- (건의내용) 지식기반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위해 투자보험공사를 설립<sup>15)</sup>
- (추진방안) 투자보험공사를 설립하는 대신, 모태펀드 확충 (('08)0.8조원 → ('12)1.6조원) 등을 통해 지식기반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추가적으로, 지경부를 중심으로 '신성장동력기획단'을 구성하여 63개 신성장동력 후보군을 선정(6.30일)하는 등 신성장동력 발굴 및 지원 추진
  - \* 9월 중 신성장동력 중장기 비전 및 발전전략 발표를 위한 보고대회 개최 예정

15) 벤처캐피탈 등 투자자가 투자시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보험사(공사)에 납부하고 투자실패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제도 단, 보험사의 투자보험 운영 손실분은 정부재정으로 보장 ⇒ 투자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설립 및 유효한 상품 개발·운영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업의 모럴해저드,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원 등의 부작용도 초래할 우려

### 12 중소기업 고용특별세액공제 도입

- (건의내용)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 촉진 및 인건비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특별세액공제'<sup>16)</sup> 도입
- (추진방안) 실효성이 떨어지는 고용특별세액공제제도를 대신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1인당 30만원) 도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제출, '08.6월)

## 2. 정상추진 중(20개)

### 1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등에 대한 R&D지원 확대

- (건의내용) 유가급등, 지구온난화 등에 따라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므로, 정부의 친환경차에 대한 R&D를 지원 확대
- (추진방안)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과 임기 중 세계 4대 '그린 카' 강국 도약을 위해, '친환경차개발 5개년계획' ('06~'10)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 플러그인 자동차(PHEV)<sup>17)</sup> 개발 T/F('08.1월~) 발굴과제 등에 대한 신규지원 추진
  - 하이브리드차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실시(대당 100만원 한도, '12.12.31일까지) ('08.9.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포함)
  - \* 그린카 기술개발의 본격추진을 위하여 '수송시스템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

16) 과거 동제도를 시행('04.7월~'05.12월)하였으나, 고용유인 효과는 미미한 반면, 자연적인 고용증가에 대한 사후보조금으로 작용하여 실효성이 없어 폐지

17)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외부로부터 충전된 배터리의 전기동력만으로 주행하다가 배터리 방전시 일반 하이브리드차처럼 운행하는 자동차

## ②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완화

- (건의내용) 기업의 영속성과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
- (추진방안)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09.1.1일 이후 최초 상속개시분부터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 피상속인 사업영위기간, 피상속인 대표이사 취임기한 등 상속공제 적용요건 완화('08.9.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포함)

<가업상속 관련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 (최대 30억원)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 (최대 100억원)
• 상속공제 적용요건		
- 피상속인 사업영위기간	15년	12년
- 대표이사 취임기한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까지 대표이사 취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 후 2년 내에 대표이사 취임

## ③ 한·중·일 김포노선 확대

- (건의내용) 한·중·일 김포노선을 확대하여 동북아 역내관광 활성화 지원
- (추진방안) 동북아 비즈니스 활동지원 및 김포공항의 유희시설 활용도 제고<sup>18)</sup>를 위해 한·일('08.8월), 한·중('08.11월 예정) 항공회담을 통해 추가노선 개설협의 진행 중
  - \* 하네다 공항의 시설용량이 증대되는 2010년부터 한국~동경 하네다 노선의 週 28회(주간 14회, 야간 14회) 추가운항에 합의

18) 김포공항 국제선은 2개 노선(동경 하네다, 상해 홍차우, 日 12회)에 이용객이 연간 167만명으로, 현 시설능력의 42% 수준

## ④ IPTV 규제장벽 해소

- (건의내용) IPTV 사업자의 채널구성의무 완화, 콘텐츠 동등 접근의무 적용대상 조정 등 IPTV시장의 규제장벽 해소
- (추진방안) '08.10월까지 IPTV 서비스가 차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08.9월) 등을 신속하게 추진
  - 사업초기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최소운용채널 축소(70개 → 50개)등을 차질없이 추진(방송법 시행령 개정, '08.11월)
  - 아울러 범정부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IPTV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08.12월)

## ⑤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한 증부세 등 과세부담 완화

- (건의내용)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에 대해 별도합산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대중골프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부담 완화
- (추진방안) 우선, 지방 회원제 골프장을 대상으로 원형보전지에 대한 증부세 등 과세부담 완화방안(2년 일몰)을 마련(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제출, '08.6월)
  - 시행성과에 따라 지속 추진여부 및 수도권 골프장으로의 확대 여부를 결정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부담 경감조치>

구 분	현행	개선
• 증부세(원형보전지)	종합합산 1~4%	별도합산특례 0.8% (과세기준 200억원 초과시 0.8% 단일세율 적용)
• 재산세(원형보전지)	종합합산 0.2%~0.5%	별도합산 0.2~0.4%
(개발지 및 건축물)	분리과세 4%	분리과세 2%

## ⑥ 의료, 교육, 관광 등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원 확대

- (건의내용) 각종 규제 및 지나친 공공성 강조로 인해 경쟁력이 저해되고 있는 의료, 교육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추진방안)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 및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을 해외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 규정' 제정 추진
  - 또한, 제2,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9월, 12월 발표예정)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

## ⑦ 주요 시장과 FTA 체결

- (건의내용) 주요 시장과의 FTA 타결시 시장확대에 따른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므로,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 및 향후 추진 예정인 FTA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 필요
- (추진방안) 현재 진행 중인 EU 및 인도와의 FTA 협상을 금년내 타결토록 노력하고,
  - 캐나다, 멕시코, GCC<sup>19)</sup> 등 여타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해서도 조기 타결을 추진
  - 호주, 뉴질랜드와의 예비협의를 비롯하여, MERCOSUR<sup>20)</sup>, 러시아, 페루 등과 조기에 협상을 개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노력도 병행
  - 다만, 일본, 중국과의 FTA는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추진

19)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페르시아만 연안의 6개 산유국이 설립한 기구

20)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중남미 4 개국이 출범시킨 공동시장

## ⑧ 한·중·일 스포츠교류 활성화

- (건의내용) 한·중·일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해 유럽 Champions League와 같은 "한·중·일 프로축구리그" 창설
- (추진방안) 현재 운영 중인 A3 챔피언스컵, AFC 챔피언스리그 등을 활성화·내실화하고,
  - 또한, 야구, 농구 등에 대해서도 올스타전, 챔피언 교류전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스포츠교류 활성화기반 마련

## ⑨ 에너지절약시설 지원확대 등 에너지 절약노력 강화

- (건의내용) 고유가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에너지 절약 시설 지원확대, 서머타임제 도입 등 에너지 절약노력 강화
- (추진방안) 에너지절약 시설에 대한 자금·세제지원을 확대\*하고
  - 신 고유가시대의 에너지 절약대책('08.4월), 고유가극복 민생 종합대책('08.6월),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대책('08.7월) 등을 차질없이 추진
  - \* ①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현행) 10%('08.12.31까지) → (확대) 20%('09.12.31까지)  
②에너지절약시설 융자지원 확대  
('07년) 4,674억원 → ('08년) 4,837억원 + 추경 500억원

## ⑩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일몰기간 연장

- (건의내용) 제조업 등 29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부여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일몰기한('08.12.31)을 연장
- (추진방안) 금년도 설비투자 추이 및 세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08.12월 말까지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
  - \* 현재의 일몰기한은 '08.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장된 것으로, 현재시점에서 추가연장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

### 11 국책연구기관 연구개발성과의 협력업체 이전

- (건의내용) 국책 연구기관들이 개발한 첨단기술의 협력업체 이전 및 제품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필요
- (추진방안)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 R&D 체제의 개편을 지속 추진('08.5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 대덕특구내 기술사업화 센터 설치, 공공기술이전조직의 민간위탁 등
- 이전유망기술을 발굴하여 기업 맞춤형 추가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공공 R&D 추가기술개발사업을 확대·추진
- 미래성장동력사업(Frontier) 실용화 제고를 위한 '연구성과 확산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 12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 (건의내용)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연보전권역 내 대규모 공장에 대한 입지규제<sup>21)</sup> 등 수도권 규제를 전면 재검토
- (추진방안)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경제권 활성화 등 지역발전기반 구축과 균형을 맞추어 수도권 관리방식 개선방안을 마련

### 13 파주·월릉 첨단산업단지내 업종제한 완화

- (건의내용) 파주 LCD 클러스터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 권역별(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등)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
  - \* 성장관리권역내 대기업의 경우 반도체 등 14개 첨단업종에 대해서만 100% 범위내 증설이 허용
- (추진방안) 개별 과제로 다루기 보다는 향후 수도권 규제 전반의 개선방안과 함께 논의

21) 자연보전권역 내 6만㎡ 이상의 공업용지 조성금지(「수도권정비계획법」), 대기업 공장증설 제한(「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법」) 등으로 인해, 하이닉스(이천), KCC(여주) 등 대규모 투자 지원

### 14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 최저임금제도 개선

- (건의내용) 외국기에 비해 높은 최저임금 수준 및 상승률<sup>22)</sup>,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현물급여 부담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고,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
- (추진방안) 기업이 제공하는 숙식비용 일부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검토 중

### 15 파주·월릉 첨단산업단지내 인프라 구축시점 단축

- (건의내용) '10년 준공 목표로 사업추진 중인 파주·월릉 첨단산업단지(84만㎡) 내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투자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인프라 구축시기 단축 요망
- (추진방안) 현재 파주·월릉 산단 진입도로에 대한 간이에비 타당성 심사가 진행 중
  - '09년 착공이 가능하도록 예산에 반영하여 적기완공을 지원
  - \*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

### 16 기업도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 확대

- (건의내용) 기업도시가 주로 낙후지역에 입지함을 감안하여 진입도로, 용수시설 등 필수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 (추진방안) 현재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추진입도로 1개소에 대해 건설비의 50%를 지원할 예정
  - 추가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기업도시 추진상황, 여타 성장거점 지원기준과의 형평성 및 사업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토

22) '08년 최저임금: 시간당 3770원(전년대비 8.3% 인상)/09년 최저임금: 시간당 4000원(6.1%인상)  
'00~'07년 동안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은 11.8%로, 동 기간 물가상승률 3.1%의 4배수준  
'01년당 GNI 대비 최저임금 지수, '08) 한국 100, 미국 56.7/63.4, 일본 59.5/71.7, 스페인 57.5

- 또한,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업종 확대 (예사: 제조, 물류업 등 → 문화산업 추가), 일몰기한 연장(예사: '09→'11년) 등 제도개선을 추진(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대회, '08.7월)

**17 정부발주공사 계약 등 입찰제도 개선**

- (건의내용) 일부 정부발주공사 계약시 여전히 봉투(직접)입찰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의 문제를 감안하여, 정부발주공사 계약 등에 있어서 입찰제도를 개선
- (추진방안) 대안공사<sup>23)</sup>에도 종합전자입찰시스템(G2B)상의 전자입찰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조기구축하고,
  -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공사 등의 계약에서도 업무특성을 저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G2B의 전자입찰이 활성화되도록 방안 강구
  - \* 추가적으로 최저가입찰제 확대시행 연기('09년), 단품슬라이딩제 적용 확대,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 도입 추진 등 국가계약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별도 추진

**18~20 지주회사규제 관련 개선방안 마련<sup>24)</sup>**

- (건의내용) 증손회사 보유규제 완화, 지주회사 규제 자율 선택권 부여, 일반지주회사의 PEF·벤처펀드 투자 허용 등 지주회사관련 규제 개선
- (추진방안) 공정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하여, '08.12월 말까지 1차 회의시 건의된 과제들을 포함하여 지주회사 규제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23) 대안입찰이 허용되는 공사로, 대안입찰은 정부시설공사 입찰시 입찰자가 내놓은 안이 정부가 당초 설계한 안보다 공사비용이 적게 들고 공기가 단축되는 등 같은 공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경우 허용

24) 1차 회의시, 지주회사와 관련되어 건의된 3가지 과제(증손회사 보유규제 완화, 지주회사 규제 자율선택권 부여, 일반지주회사의 PEF, 벤처 투자 허용)를 함께 논의

**3. 추가 검토 중인 과제(2개)**

**1 제2롯데월드 신축관련 규제완화**

- (건의내용) 군용기 항로 조정 등을 통해 고도제한문제를 해소하여, 롯데그룹 측에서 지난 14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초고층 복합관광단지 조성 프로젝트를 승인
- (추진방안) 실현가능한 대안을 놓고 관계기관간 적극 검토 중

**2 지주회사 체제내 회사간 수입배당금 전액 비과세**

- (건의내용) 법인간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지주회사 체제내 모든 회사들간 수입배당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 (검토의견) 현재 지주회사의 특성을 인정하여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일반법인간 배당금<sup>25)</sup>에 비해 높은 익금불산입율이 적용

<지주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율>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지분비율	익금불산입율	지분비율	익금불산입율		
	'08	'09	'08	'09	
100%	100%	100%	100%	100%	
40~100%미만	90%	100%	80~100%미만	90%	100%
20~40%이하	80%	80%	40~80%이하	80%	80%
20%미만	30%	30%	40%이하	30%	30%

- 현재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일반법인간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이 적용
- 익금불산입범위 확대여부는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 간소화 등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검토

25) <일반법인간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율>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지분비율	익금불산입율	지분비율	익금불산입율
100%	100%	100%	100%
30~100%미만	50%	50~100%미만	50%
30%이하	30%	50%이하	30%

#### 4. 추진과제 과제(3개)

##### ① 석유화학산업 기업결합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

- (건의내용) 석유화학업체간 과당경쟁 해소 및 글로벌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예외조항 신설 및 탄력적인 기업결합심사 허용
- (검토의견) 현재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적인 예외인정 요건을 구비(제7조 제2항)하고 있어 석유화학산업에 한해 별도의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어려움
  - 기업결합 심사시 수출·입 비중, 해외경쟁정도, 효율성 증대 효과 등 산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②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등 기업에 대한 상속세제 개선

- (건의내용)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적용을 제외하여 상속에 따른 경영권 불안 등을 방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이 50%이하 ⇒ 20%(중소기업의 경우, 10%)
-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이 50%초과 ⇒ 30%(중소기업의 경우, 15%)

- (검토의견) 최대주주 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여 일반주식보다 20~30%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하는 현행 제도는 경제적 실질, 조세평등주의에 부합
  - \* 현재에서도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는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시('03.1월)
  - 다만,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한해 '09.12.31일까지 할증평가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일몰기한 연장여부는 시행성과 등을 바탕으로 '09년도에 결정

##### ③ 사회복지인력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

- (건의내용)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제도<sup>26)</sup> 폐지('12년)로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사회복지인력을 중소기업체에 배정
  - (검토의견) 사회복지제도는 잉여 병역자원을 사회복지, 보건 의료,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지원하는 제도로서,
    - 도입취지(사회복지 등 공익목적), 전·의경('12년 폐지예정) 등 대체복무제도와 의 형평성 및 병역인력 공급의 애로 등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체에 배정·지원하는 것은 곤란
    - 다만, '12년 이후에도 제도가 유지되는 전문연구요원(석·박사급)의 경우, 중소기업 배정비율 확대 추진(35%('08) → 50%('09))
- ※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전면 폐지되는 '12년 이전에 병역자원의 수급여건을 재점검하여, 잉여 병역자원이 예상되는 경우 다양한 활용방안 검토

26) 대체복무제도는 당초 잉여인력자원의 기간산업·방위사업 지원이라는 도입취지 변질에 대한 비판과 함께, 허술한 관리로 각종 탈법행위가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편 필요성이 제기

## V. 향후 추진계획 (Action Plan)

- 이번 대책의 과제도 지난 대책과 같이 시행에 따른 준비여건에 따라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시행
  - 단기과제 : 행정행위 등을 통해 가능한 과제  
(‘08.10.30일까지 이행완료)
  - 중기과제 :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과제  
(‘08.12.31일까지 이행완료)
  - 장기과제 :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  
(‘09년 상반기중 이행완료)
- 이행실태는 분기별로 1·2단계 대책과제를 통합·점검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 및 민관합동경제활성화회의에 보고
  - 금년 3/4분기 점검은 1단계 대책의 중·단기과제와 2단계 대책의 단기과제 위주로 10월중 실시
  - 4/4분기 점검은 1단계 대책의 장기과제와 2단계 대책의 중기과제를 위주로 12월말경 실시
  - 이행 부진과제는 지속적으로 관련부처와 보완조치를 마련
- 한편, 기업규제 전반에 대한 타당성과 바람직한 규율체계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개선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조치 (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완화를 조기에 마무리)
- 앞으로도 새로운 분야 (유통·환경·식품 등)의 기업투자 애로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후속 대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

## 별 첨 과제별 세부추진 일정

### ① 중소기업 지원 강화

	실천과제	실천내용	담당기관	세부일정
1	중소기업 R&D 지원확대	관련 예산에 반영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08.12.31
2	R&D 협력펀드 조성	공동 R&D협력펀드에 대해 대기업과 MOU 체결	중소기업청	'08.12.31
3	R&D 기획단계 평가·지원 강화	R&D연계 시스템 구축 및 지원과제 선정	중소기업청	'09.1.31
4	R&D 사업화 교육강화	중소·벤처 현장 실무인력 대상 맞춤형 교육과정 마련	지식경제부	'09.상반
5	기능대학의 특성화	기능대학 개편 방안 마련	노동부	'08.11.30
6	산학 겸임교수 활용대학에 인센티브 부여	제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계획에 반영	교육과학기술부	'08.12.31
7	산단내 대학 교육과정 설치근거 마련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08.12.31
8	지역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산업집적활성화 기본 계획수립	지식경제부	'09.3.31
9	지역혁신 지원기관의 통합·연계	지역혁신 지원기관 통합·연계 확대	지식경제부	'09.상반
10	디자인 설정 등록료 및 연차 등록료 인하	디자인 관련 특허수수료 체계 개편	특허청	'09.1.31
11	디자인 경영 컨설팅 지원	지원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및 지원 추진	지식경제부	'09.3.31
12	디자인전문가 고용비용 지원	세부지원방안 마련	지식경제부	'09.상반
13	GD제도와 해외 디자인 시상제도간 상호인정 추진	해외 우수디자인 선정제도와 상호인정 확대 추진안 마련	지식경제부	'08.10.31
14	중소기업 브랜드 개발 지원	국가 브랜드 발전 로드맵 개발·적용	지식경제부	'09.상반

15	프리보드시장 활성화	모태조합운용지침 개정	중소기업청	'08.12.31
16	중소기업 수출금융 공급체계 확충	참여단체 및 기관간 MOU 체결 및 One-Stop 서비스 지원	지식경제부	'08.10.31
17	기술사업화·거래 활성화	기술사업화DB 통합 유통체계 구축	지식경제부	'08.10월 착수
18	무역상사 제도개선	중견 무역상사 지정제도 도입(무역협회)	지식경제부	'08.12.31
19	해외 중소수출기업 지원기관 집적화	관련 예산 반영, 지침개정	지식경제부	'08.12.31
20	한·일 부품소재 전용공단 조성	전용공단 조성계획 수립	지식경제부	'08.12.31
21	U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용자지원 대상포함 및 입지 우대)	관련 지침 개정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08.12.31
22	국가별 청산절차·방법 관련 정보 제공	KOTRA '해외진출정보 시스템' 개선	지식경제부	'08.11.30
23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	온실가스 관련 국가표준 정비·보급, 국제표준 제정 주도, 관련예산 반영	지식경제부 환경부	지속추진
24	'1인기업' 활성화	'1인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개시	중소기업청	'09.상반
25	장기근무 창업지원자 지원강화	주말창업강좌 시범운영 개시	중소기업청	'08.10.31
26	창업보육센터 체계 개편	개편안 마련	중소기업청	'08.12.31
27	사업전환제도 승인신청자격 업종 제한 폐지	'중소기업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중소기업청	'08.12.31
28	회생 및 사업정리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 개통	중소기업청	'08.10.31
29	벤처기업 지원제도 정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중소기업청	'09.12.31
30	'간이 영업양도 제도' 도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중소기업청	'08.12.31

31	중소기업의 해외 퇴직기술자 활용 지원 확대	관련 예산에 반영	중소기업청	'08.12.31
32	해외 전문인력 정보수집 및 취업 알선지원 확대	KOTRA 해외네트워크 확충	지식경제부	'08.12.31
33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확대	관련 예산에 반영	중소기업청	'08.12.31
34	비정규직법 보완	정부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	노동부	'08.12.31

## ② 규제완화

	실천과제	실천내용	담당기관	세부일정
1	항만하역 요금체계 개선	「항만하역요금표」 개정	국토해양부	'09.상반
2	항만박 컨테이너 보세처리장 탄력 운영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	'08.12.31
3	예선업 규제완화 추진	예선업체 여건 분석('08말) 등을 통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항만법에 반영	국토해양부	'09.하반
4	Tug Car 등록기준 합리화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	환경부	'08.하반
5	제한차량 운행허가 처리방식 개선	제한차량 운행허가 인터넷 프로그램 개발·시행	국토해양부	'09.상반
6	이용약관 인가제 개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방송통신위원회	'08.12.31
7	연구개발 출연금 제도 개선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개정	지식경제부	'08.12.31
8	임원결격 사유기준 합리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송통신위원회	'09.상반
9	대외채권 회수의무 합리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기획재정부	'08.12.31
10	현지법인의 현지금융 활용방식 개선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기획재정부	'08.12.31

11	외국환 거래법령 위반시 제재 합리화	「외국환거래법」 개정	기획재정부	'09.상반
12	입찰·수입대행처에 대한 이행보증 신고완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기획재정부	'08.12.31
13	외국환 거래 관련 행정절차 개선	유관기관간 협조 강화	기획재정부	'08.12.31
14	상호계산계정의 결산주기 개선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기획재정부	'08.12.31
15	금융기관 외국환 업무 허용범위 확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기획재정부	'08.12.31

### ③ 당면투자 애로 해소

	실천과제	실천내용	담당기관	세부일정
1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등에 대한 R&D 지원 확대	예산지원 등	지식경제부	계속
2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완화	상속세법 개정	기획재정부	'08.12.31
3	한·중·일 김포노선 확대	한·중, 한·일 항공회담 등 협의 진행	국토해양부	'08.12.31
4	IPTV 규제장벽 해소	종합계획 수립	방송통신위원회	'08.12.31
5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에 대한 중부세 등 과세부담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기획재정부	계속
6	의료, 교육, 관광 등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원 확대	의료법 개정 특별법 제정	보건복지부	'08.12.31 '08.12.31
7	주요 시장과 FTA 체결	국가간 협약체결	외교통상부	계속
8	한·중·일 스포츠교류 활성화	국가간 협의 및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계속
9	에너지절약시설 지원확대 등 에너지절약노력 강화	기수립된 대책 추진	지식경제부	계속
10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일몰 기간 연장	방침 결정	기획재정부	'08.12.31

11	국책연구기관 연구개발성과의 협력업체 이전	사업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계속
12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수도권 규제 합리화방안 마련	국토해양부	계속
13	파주, 월릉 첨단산업단지내 업종제한 완화	수도권 규제 합리화방안과 함께 논의	지식경제부	계속
14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 최저임금제도 개선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대안 마련	노동부	'08.12.31
15	파주, 월릉 첨단산업단지내 인프라 구축시점 단축	타당성 심사 완료, 심사 결과에 따른 예산지원	국토해양부	'08~'10
16	기업도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 확대	예산지원 등	국토해양부	'08.12.31
17	정부발주공사 등 입찰제도 개선	관련제도 정비	기획재정부	'08.12.31
18 ~ 20	지주회사관련 개선방안 마련 * 증손회사 보유규제 완화, 지주회사 규제 자율선택권 부여, 일반지주회사의 PEF, 벤처 투자 허용	개선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08.12.31
21	제2롯데월드 신축관련 규제완화	대안 마련	국방부	'08.12.31
22	지주회사 체제내 회사간 수입배당금 전액 비과세	과세 관련제도 종합검토	기획재정부	'09년~